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41 발의연월일: 2021. 9. 1.

발 의 자:윤준병·강득구·김수흥

박성준 · 송옥주 · 위성곤

아 이용빈 · 임종성

전재수 · 정일영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만여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벌목으로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벌목으로 인하여 식물 군락지가 훼손되고 야생 동물이 그 서식지를 잃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산지개발사업과 달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사업 등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 등에 관한 계획과 사업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벌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2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 제22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의2.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
	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	
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	
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	
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의2.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
	는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